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의안 번호	5532
----------	------

제출일자 : 2019.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 요구이유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중구 대봉동 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가 '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국비 15.8억, 시비 8억) '18. 12. 28일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제2018-69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 대봉동 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시설로서 금년 5월, 부지 252.62㎡, 연면적 357.93㎡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국비로 매입하였고 '20년 시비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 및 국비로 장비 구축 후 '20년 10월경 개소 예정임.
- 이에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의 소공인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설치·운영개요

- 명 칭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 위 치 : 중구 동덕로8길 20-9(대봉1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 규 모 : 부지 252.62m<sup>2</sup>, 건축면적 150.57m<sup>2</sup>, 연면적 357.93m<sup>2</sup>(지상3층)
- 주요시설 : 홍보·전시관, 공동장비실, 교육장, 사무실 등
- 사업기간 : '18. 10월 ~ '21. 9월(3년간)
- 총사업비 : 2,380백만원(국비 1,580, 시비 800)
  - 건물매입비 1,015백만원, 장비구축비 570백만원, 리모델링(인테리어포함) 공사비 450백만원, 시설운영(민간위탁금) 345백만원

##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20년 상반기 ~ '22. 12. 31)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위탁방법 : 전문단체와 수의계약 체결(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 수탁기관(안) : (사)디자인정책연구원
  - ※ 당초 중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인 (사)디자인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 위탁 주요사무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관리
  - 교육·공용장비 등 인프라 시설 활용 및 관리
  - 국내외 소공인간, 웨딩 관련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 소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등 각종 교육사업
  - 인프라 연계 신규사업 발굴·시행
  - 그 밖에 소공인 역량강화 및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 위탁조건
  - 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 매 회계연도마다 민간위탁금 정산 후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 조치
  - 관련 법규 준수 및 기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위·수탁협약에 따라 관리·운영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소요예산 증가와 순환 보직에 따른 네트워크 부족, 장비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 민간위탁 시, 민간의 경험 및 전문지식 활용을 통한 사업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 소요예산 절감 및 시설의 탄력적 운영, 소공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급변하는 업황에 시의적 대응 용이
- '16년 ~ '18년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16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대구 대봉동 포함), 그 중 15개 지구에서 민간위탁 실시 및 추진 중임.

## □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장·단점

- 장점 : 민간의 전문지식과 소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웨딩산업 비즈니스 센터 및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 도모
- 단점 : 민간이 관리·운영함에 따라 공공성 저하 우려

### 나. 민간위탁추진계획 : 붙임

###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제10조~제13조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봉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시설인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 I

### 위탁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통한 사업의 능률성, 전문성 제고
-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시 행·재정적 부담 경감
- 소공인과의 네트워킹 및 급변하는 업황에 시의적 대응 용이

☞ 공공기관 직영 관리 보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소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 II

### 추진방침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 구축·운영」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9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18. 12. 28)
- 공동인프라 구축 건물(중구 동덕로8길 20-9)을 매입에 따라 건물관리 및 공동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III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제10조~제13조, 제18조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 IV

### 세부추진계획

#### 1 위탁개요

- 대상시설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위치	규모	주요시설	비고
중구 동덕로8길 20-9 (대봉1동소공인집적지구내)	- 지상3층 · 부 지 252.62㎡ · 연면적 357.93㎡	(1층) 전시·홍보관 (2층) 교육장, 공동장비실 (3층) 사무실, 회의실	

※ 2020년 당해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준공('20. 9월 예정)

- 위탁시기 : '20년 상반기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20년 상반기 ~ '22. 12. 31)  
\* 위탁기간만료 도래시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재계약가능
- 위탁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전문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 당초 중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 인력규모 : 3명 정도(센터장1, 직원2)  
\* 정원3명 이내에서 예산 등 추진상황에 따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내 겸직 등 탄력적 운영
- 위탁조건
  - 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 매 회계연도마다 민간위탁금 정산 후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 조치
  - 관련 법규 준수 및 기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위·수탁협약에 따라 관리·운영

## 2 수탁기관

### ○ 기관개요

- 기 관 명 : (사)디자인정책연구원
- 설립일/인력현황 : '09. 4. 15/11명
- 주 소 : 중구 동덕로8길 34-15(대봉동)
- 주요사업 : 기업지원, 학술용역, 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 ○ 수의계약 사유

- 웨딩 비즈니스 산업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영리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공모 신청 사업 제안
  - \* 사업신청 시 소공인 네트워크 및 정보 보유, 대봉의류봉제 웨딩산업 활성화 지속 지원
- '18년부터 대봉의류봉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중
  -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19년 예산 4억원(국3.4억원, 시0.6억원)
  -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시설 준공 후 이전 예정  
(현재) 디자인정책연구원 2층 → (준공 후)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내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웨딩산업 비즈니스 센터」와 기 운영 중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국가직접지원 사업)를 같이 운영함으로써 대봉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소공인 집적지구내 운영주체는 1개 기관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1개 기관이 2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3 위탁사무 내용

-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관리

- 교육·공용장비 등 인프라 시설 활용 및 관리
- 국내외 소공인 간, 웨딩 관련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 소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등 각종 교육사업
- 인프라 연계 신규사업 발굴·시행
- 그 밖에 소공인 역량강화 및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4 위탁비용(안)**

○ 2020년도 예산 : 170백만원정도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170,000천원	
사업비	소 계	40,000천원	
	홍보관 홍보비	5,000천원	- 센터 홍보관 행사 - 리플렛 제작 및 배부, 현수막 등
	장비사용지원	7,000천원	- 재료비
	소공인 특화교육	8,000천원	- 마케팅 교육 2회 - 산업재해 대비교육 2회 - 장비 운영 교육 등 기타
	소공인 역량강화사업	15,000천원	- 홈페이지 및 회사 CI, BI 작업 3건
	위원회 및 교류회 운영	5,000천원	- 선정평가위원회 등 운영 - 이종간교류회
운영비	소 계	130,000천원	
	인 건 비	90,000천원	- 직원수 : 3명(센터장, 직원2)
	일반운영비 등	40,00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 1차년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으로서, 2차 ~ 3차년도 민간위탁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일부 증액·조정 등 변경될 수 있음.

V

**기대효과**

-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소공인 네트워킹 및 협업 활성화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련 웨딩산업 구조 고도화
- 패션·뷰티·주얼리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토털 웨딩산업 소공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VI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 '19. 9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의회동의 : '19. 10월
- 위·수탁 협약체결,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 : '19. 12월
- 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 '20. 1월 ~ 2월
- 리모델링(인테리어포함) 공사 : '20. 상반기
- 업무 개시(예정) : '20. 상반기

**참고1**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위치 및 전경**

시설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20-9		
	시설규모	부지면적 : 252.62㎡, 연면적 : 357.93㎡(지상 3층)		
	시설용도	1층 홍보·전시관/ 2층 공동장비실, 교육장/ 3층 사무실		
	준공일자	2002.11.15	개관일자	2020. 10월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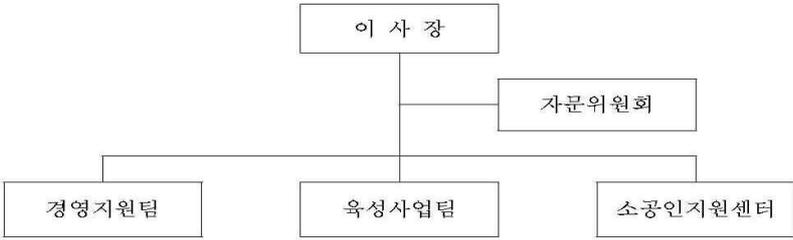
**건물 외부전경**

**건물 내부전경**



## 참고2

## 수탁기관(안) 현황

단체명 (주소)	<b>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b>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길 34-15, 3층(대봉동))		
설립목적	미래 도래할 디자인산업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유도하고, 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조사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여함에 있음		
단체연혁	2009년 03월	연구원설립 발기인 총회	
	2009년 04월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 법인설립 인가(구 지식경제부)	
	2009년 04월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 개원(수성구 지산동)	
	2009년 04월	초대 이사장 김종식 취임	
	2014년 12월	지역특화상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상	
	2015년 12월	연구원 이전, 대구 중구 대봉동	
인력현황	이사장 1명, 이사 1명, 연구원 5명		
기구표	 <pre> graph TD     A[이사장] --- B[자문위원회]     A --- C[경영지원팀]     A --- D[육성사업팀]     A --- E[소공인지원센터] </pre>		
2019년도 예산현황	일반관리비 : 151,000천원 사업운영비 : 710,000천원	인건비 : 360,000천원 합계 : 1,221,000천원	
2018년도 주요사업 실적	06~11월	낙동강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	150,000천원
	06~12월	청년창업벤처아이디어경진대회	180,000천원
	05~12월	청년디자인4.0특공대운영용역	193,000천원
	05~08월	영양오무산골조성기획안용역	18,680천원
	04~05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홍보관운영	43,000천원
	02~12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180,000천원
	01~12월	금자은자를활용한청년창업콘텐츠개발	196,000천원
	01~12월	동천유원지 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43,200천원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	05~11월	대한민국어린이안전디자인산업대전	157,000천원
	06~11월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	150,000천원
	06~12월	청년행복디자인특공대	160,000천원
	06~12월	청년창업벤처아이디어경진대회	250,000천원
	04~11월	연구용역사업	72,000천원
	02~12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410,400천원
	01~08월	동천유원지일원도시재생활성화사업	21,600천원

## 참고3

## 타 시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위탁현황

▣ '16년 ~ '18년 16개 집적지구 지정 : 서울5, 충북1, 경기5, 강원3, 부산1, 대구1

연도	지역	집적지구	민간위탁기관	비 고
'16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산업진흥원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영등포구 문래동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기계·금속(C24, C25, C29)
		중구 종로일대	(사)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귀금속 제조
'17	충북	청주시 중앙동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산업진흥원	기계·금속(C29, C25)
		양주시 남면	(재)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제품(C13)
		용인시 영덕동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부산디자인센터	의류(C14)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수산물 제조 식료품(C10)
		강릉시 사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과제조 식료품(C10)
		인제군 북면	-	황태가공 식료품(C10)
'18	서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의류협회	의류(C14)
		서울 성북구 일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의류(C14)
	경기	경기도 군포 군포1동	(재)군포산업진흥원	금속가공(C25)
		경기도 포천 가산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C32)
	대구	대구 중구 대봉동	(민간위탁 추진중)	웨딩관련 의류제조(C14)

## 참고4

# 관계법규

### ①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7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8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2. 창업상담·컨설팅·교육 등에 대한 정보데이터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지원
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8.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지원
9.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10.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